소성초등학교규칙

제정 2001.09.07. 행정 제168호 개정 2002.12.21. 행정 제203호 개정 2004.04.01. 대통령령 18282호 개정 2006.03.06. 행정 제2668호

개정 2011.04.14. 학운위심의

개정 2013.02.21. 학운위심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있는 "학교교칙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소성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 소재지는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1길 130으로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3. 여름방학(7월 중순 ~ 8월말)과 겨울방학(12월말 ~ 2월초)
 - 4. 학년말 방학(2월 중순 ~ 2월말)
 - 5. 주5일제 수업 계획에 의한 월2회 이상의 토요휴무일
 - 6. 기타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휴업일
- ② 학교장은 제1항 제3호에서 제6호의 휴가기간은 법정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상급관청(정읍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휴업 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 ⑤ 학교의 휴업일은 제1항 각 호의 휴업 일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2월 말까지)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당해연도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급배정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 ②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어린이 학적은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입학이후에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어린이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결석 중에 있는 어린이

제4장 교육과정 편성·운영·교과·수업일수

- 제9조(교육과정 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 과정과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그리고 <mark>정읍교육지원청</mark>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장학 지침에 의거 본교 교과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제10조(교과) 전 학년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에 따른다.

제11조(수업운영 방법 등)

- ① 수업시간의 운영에 필요한 일일시정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수업시간은 1시간을 40분단위로 운영하되 80분 단위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특별활동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상 필요한 주간교수 계획안을 작성하여 수업에 임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장은 체험 학습내용과 경비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여야 하고, 당해 교사는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특정 교육활동에 대하여 시간에 구애 없이 운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체험학습)

-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추진할 수 있고 교육과정 이수 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석 수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개인 교환학습
 - 단체 교환학습
 - © 교외체험학습
- ② 체험학습을 위하여 교환학습을 의뢰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 야 하며, 승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의뢰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뢰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단체 교환학습을 위하여 농어촌 학교 잉여교실을 사용하고자 시설 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승인 불가능할 시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초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13조(개별 위탁 체험학습)

제14조(학교 간 교류학습)

제15조(효도방문 및 가족동반 체험학습)

제16조(교육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③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성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7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업 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을 거쳐야 한다.
-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로 인정할수 있다.

제18조(특수교육 및 학습부진아 지도)

- ① 극심한 학습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어린이는 특수아동 판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특수학급에 입급 시켜 특별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학습 부진아의 선별은 1학기 초에 2회 이상의 판별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 야 한다.
- ③ 학습활동이 부진한 어린이는 방학 중의 기간을 이용하여 보충지도를 받게 할 수 있다.
- ④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차별 금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1항)
-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장애를 이유로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전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 ©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2항)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②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류」제4조의 차별
 - ⑥ 통합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①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⑦ 개별화교육지원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 ①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 원팀을 구성하되,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 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 하고,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 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정읍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한다.

제19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20조(입학 시기)

-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21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정읍교육장의 배정과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써 결정된다.

제22조(편입학)

- ①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 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 의 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 신청으로 결정한다.
- ②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 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제25조(장기결석자의 정원 외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관리(진급유예)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대상자(진 급유예)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본 규정 제30조 1,2항 규정에 의하여 교과

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조기졸 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범위)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하며, 조기졸업이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개정, 2013년 2월 21일)

제28조(대상자 선정)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 지능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 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으로 한다.

제29조(대상자 학습방법)

- ①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이수
- ②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이수
- ③ 상설 동 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
- ④ 지역합동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
- ⑤ 여름방학 심화과정·겨울방학 심화과정 운영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0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도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8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 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 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신설, 2013년 2월 21일)

제31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 력이 양호한 학생으로서 학업성취가 우수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학생을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3년 2월 21일)

제32조(이수인정 평가)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제33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 및 운영 전문가(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와 교육과정 전문가(교과 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공석일 경우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3년 2월 21일)
- ② 위원회는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쳐 평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년 2월 21일)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4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 규정을 정한다.

제35조(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상세한 지도방법은 학교생활규정 제36조에 명시)
 - 1. 학교 내 봉사
 - 2. 사회 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출석정지 기간은 <u>미인정결석</u>으로 처리(특기사항란에 사유 기재 않음)
 - ※ 출석정지 기간에는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 교육제공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8장 기타

제37조(학교규칙 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교규칙의 개정안을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의하고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② 최종시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 한다.
- ③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에 의하며,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부 칙(2001. 9. 7. 행정 제168호)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1. 행정 제203호)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2년 1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17. 대통령령 제18282 공포 시행)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제8장 제35조로 2005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개 정, 2013년 2월 21일)

부 칙(2006. 3. 6. 행정 제2668호)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제8장 제36조 부칙4로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3년 2월 21일)

부 칙(2011. 4. 14.)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1.)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3년 2월 21일)

부 칙(2019. 12. 10.)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일로부터 시행한다.